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외 11명

○ 의안번호 : 제1069호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16일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 안 이 유

○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서울시 현황에 맞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나.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다.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안 제5조)

라. 보조금지급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안 제6～7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 토 의 견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가. 신설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 서울시 현황에 맞게 유아숲체험원 규모 및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상위 법령 분석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교육시설 설치·운영의 근거 법령임.

○ 2012년 7월 제정될 당시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은 2만m^2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1만m^2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광역도시의 경우 산림면적 확보가 어려워 등록기준 면적 축소의 요구가 있어왔음.

○ 2018년 8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에 특별시장은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음.

2) 서울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에서는 유아숲체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2015년 까지 '유아숲체험원' 28곳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유아숲체험원 10개를 조성하여 62개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중임.

○ 2017년부터는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50곳을 조성하였음.

○ 법령 제정 이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유아숲체험원 관련 사업은 일부 국비를 지원 받아 조성한 대상지도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설치 요구가 있음.

〈서울시 유아숲 체험시설 추진실적〉

구 분	총계	'15년 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비 고
총 계	312	28	13	106	105	60	
유아숲체험원	62	28	13	6	5	10	유아숲체험장 포함
유아동네숲터	250	-	-	100	100	50	

3) 조례안 조항에 관한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는 산림, 산림교육,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유아숲체험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식생이 다양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1만m^2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 서울시의 경우 화장실,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넓은 면적이 필요한 '유아숲체험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접근 가

능하고 숲을 자연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므로, 서울시 현황에 맞는 '유아동네숲터'라는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향후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② **안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 산림청장이 계획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제2차 산림교육종합계획(2018~2022년)이 발표된 상태로

- 서울시에서는 2017년 유아숲 체험시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교육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안 제4조의 내용은 산림청장의 산림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산림교육 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조치이며, 향후 정책변화나 운영계획 변화에 따른 산림교육 지역계획의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③ **안 제5조(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

○ 안 제5조는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을 5천m^2이상, 유아동네숲터는 300~5,000m^2로 정하였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유아숲체험시설의 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③ **안 제6~7조**

○ 안 제6조 보조금, 제7조 표창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유아숲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참고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 2.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구분	관리청	공원명	위 치	조성규모 (㎡)	조 성 비 (백만원)	비 고
계			52개소	540,400	14,779	
2012	소계		3개소	28,400	2,100	
	용 산	응 봉	용산구 한남동 산8-1	10,100	700	
	강 서	우 장	강서구 내발산동 산19-1	8,600	700	
	관 악	관악산	청룡동 산175-36	9,700	700	
2013	소계		9개소	98,000	4,353	
	중부사업소	남 산	용산구 한남동 772-1	10,000	301	
	종 로	삼 청	종로구 삼청동 산2-1	13,000	700	
	동대문	배봉산	동대문구 휘경동 산6-83	10,000	580	
	성 북	개운산	성북구 돈암동 산6-1	9,000	301	
	강 북	오 동	강북구 번동 산23-17	8,000	312	
	노 원	수락산	노원구 상계동 산155-1	13,000	640	
	마 포	상 암	마포구 상암동 산26-38	15,000	582	
	금 천	관악산	금천구 독산동 산199-1	12,000	603	
	송 파	장 지	송파구 장지동 851	8,000	334	
2014	소계		6개소	65,000	1,323	
	중 랑	용마산	중랑구 면목동 31-25	10,000	181	
	도 봉	초안산	도봉구 창동 산24	10,000	318	
	은 평	서오릉	은평구 진관동 390	10,000	161	
	서대문	인왕산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10,000	181	
	구 로	개웅산	구로구 개봉동 산53-3	11,000	231	
	서 초	문화예술	서초구 양재동 200	14,000	251	
2015	소계		10개소	113,000	1,963	
	동부사업소	서울숲	성동구 성수1가 685-124	10,000	100	
	도 봉	쌍 문	쌍문4동 산82	13,000	317	
	노 원	영축산	월계동 산130	13,000	200	
	은 평	신 사	신사동 98-46	11,000	198	
	양 천	계 남	신정3동 621	10,000	200	
	동 작	현 충	상도1동 산49-36	13,000	200	
	서 초	우면산	서초구 산36-6	10,000	198	
	강 남	대모산	일원동 436-6	10,000	200	
	송 파	오 금	오금동 51	10,000	150	
	강 동	일자산	둔촌동 산102-4	13,000	200	
2016	소계		13개소	126,000	2,790	
	중부사업소	장충공원	중구 장충동 2가 산14-21	5,000	80	
	종 로 구	낙산공원 등	동숭동 산2-32	15,000	300	

구분	관리청	공원명	위 치	조성규모 (m^2)	조 성 비 (백만원)	비 고
	성 동 구	대현산(응봉)	금호1가동 산37-1	8,000	150	
	광 진 구	용 마	중곡동 143-146	10,000	180	
	중 랑 구	봉화산	묵동 산41-11	12,000	300	
	강 북 구	북한산	미아동 산108-19	10,000	300	
	노 원 구	불암산(중계)	중계동 산95-1	12,000	440	
	서대문구	백 련	홍은동 산19-19	10,000	200	
	양 천 구	용왕산	목동 199-51	10,000	150	
	강 서 구	꿩고개	방화3동 산136-6	8,000	200	
	영등포구	영등포	영등포본동 582-3	6,000	100	
	동 작 구	상 도	상도동 531-15	10,000	190	
	강 동 구	명 일	상일동 산26-6	10,000	200	
2017	소계		6개소	60,000	1,250	
	동대문구	답십리	답십리동 2-299	10,000	200	
	양천구	온수(신월)	신월동 331-5	10,000	200	
	구로구	온수(잣절)	개봉동 45-2	10,000	200	
	관악구	관악산(낙성대)	낙성대동 산25	10,000	200	
	서초구	방 배	방배동 산44	10,000	200	
	노원구	불암산(삼육대)	공릉동 산223-1일대	10,000	250	
2018	소계		5개소	50,000	1,000	
	성동구	응봉(매봉산)	옥수동 436-9	10,000	200	
	관악구	관악산(선우)	미성동 117-1	10,000	200	
	동부사업소	보라매	신대방동 산143	10,000	200	주민참여
	성동구	응봉(금호산)	금호3가동 산2-1	10,000	200	주민참여
	동대문구	홍 릉	청량리동 산1-143	10,000	200	주민참여
2019	소 계		10 개소	100,000	2,000	
	광진구	용마(광진)	광장동 5-125	10,000	200	
	도봉구	쌍 문	방학동 산90-14	10,000	200	
	관악구	관악산(삼성동)	신림동(삼성동) 산68-2	10,000	200	
	중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번동 산28-6	10,000	200	
	서부사업소	월드컵	상암동 1538	10,000	200	
	도봉구	초안산(도봉)	창3동 산194-2	10,000	200	
	양천구	온수(매봉산)	신정3동 814	10,000	200	
	강서구	봉제산	화곡동 산42-8	10,000	200	
	관악구	관악산(대학동)	신림동(대학동) 산50-21	10,000	200	
	관악구	상 도	봉천동 산133-20	10,000	200	